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검토보고서

2024. 11. 27.(수)

검토안건	제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가족행복지원과)
- 제안일 : 2024. 11. 15.
- 회부일 : 2024. 11. 18. (의안번호 : 24-162)

2. 제안이유

- 저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 및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나. 결혼친화환경 기본 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다.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및 업무의 위탁(안 제4조~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6조)
- 마. 홍보 및 표창(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4. 10. 4. ~ 10. 24.(제출의견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2024. 11. 6.)
 -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일부반영)

해당 내용(원안)	수정 의결 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결혼 장려’는 개인의 선택을 압박하고 결혼 자체를 사회적 의무로 인식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결혼 준비’로 수정을 제안함 : 결혼이 아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 구민들에게 부담과 압박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선택한 구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의미로의 개선안에 동의하되, ‘준비’로의 수정은 제4호(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일부만이 포함되므로 포괄적으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절충하여 개선함.

- 기타 부서의견 : 반영

해당 내용(원안)	수정 의결 사항
제1조(목적) ~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마포구민 및 마포구 지역사회의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마포구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면서 제1조 목적 조항이 수정됨에 따라 문맥의 조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해당 조문을 재검토하여 ‘마포구민 및 마포구 지역사회’에서 ‘마포구 지역사회’에는 ‘마포구민’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포구민’을 삭제하여 중복을 피하고, ‘건강한 결혼’을 ‘건강한 가족’으로 수정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의 궁극적 목적을 드러내 주기로 함

-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으로 수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북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으로 저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 및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마포구민과 마포구 지역사회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결혼친화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미혼남녀 만남 지원 관련 행사추진 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및 위탁사항을,

- 안 제6조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기업·단체 등과
의 협력체계 구축을,
-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관련정보의 홍보 및 유공포창
근거를 규정하는 등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23년 서울시 혼인건수는 36,324건
으로 전년대비 572건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혼인건수(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시 (합계출산률)	48,261	44,746	37,012	35,752	36,324 (0.552)
마포구 (합계출산률)	2,029	1,929	1,578	1,520	1,573 (0.476)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장기화 추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올바른 결혼문화를 지향하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 및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
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3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따라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결혼친화적 사회분 위기를 조성하여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 제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 현재 결혼친화 관련 조례는 전국에서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미혼남녀 만남 지원을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2개이며 성남시의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몬(SOLO MON)의 선택”은 실제 결혼 사례도 있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서울시도 지난해 단체미팅을 실시하였으나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여론에 무산되었던 사업을 올해 다시 진행하였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여론과, 저출생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으며, 개인의 만남에 예산투입을 하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최근 3년간(2021~2023)서울시 25개 자치구 결혼 건수를 살펴보면 마포구는 평균 1,557건으로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48명으로 22위를 차지하고 있어 결혼이 곧 출산율을 높이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오히려 결혼과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가장 큰 장애물(예: 실업, 주택, 육아 등 사회적 문제)을 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본 조례에 따르는 각종 시책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가족행복 지원과	김은숙 (8910)	김지영 (89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7조(홍보)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김강은 (☎ 3153-8926)

참고 자료

1. 관계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② (생략)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⑤ (생략)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

2.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제정 현황

▶ 결혼친화 관련 조례 : 14개 지방자치단체

연번	자치단체명	조례명	제정일
1	서울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3.3.9
2	서울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3.7.13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22.4.13
4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3.9.18
5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4.7.1
6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3.8.11
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21.10.1
8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8.3
9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3.12.11
10	충청북도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4.5.17
11	충청남도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1.2.22
12	전라남도	전라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1.12.23
13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3.3.10
14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1.12.31

▶ 미혼남녀 만남 지원 명시 조례 : 2개 지방자치단체

연번	자치단체명	조례명	제정일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3.8.11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4.7.1